

# 2025년 「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「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## 1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지원, 시제품 제작, 홍보 등 수요기업 맞춤형 자금 및 컨설팅 지원
- **지원규모:** 총 20개사\* 내외, 총 10억원(기업당 사업화 자금 5천만원)  
\* 정부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부담(예비창업자도 현금 부담 비율은 동일)

### □ 지원내용: 사업화 자금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

- 사업화 컨설팅 지원: 국내외 홍보·마케팅 또는 판로개척 컨설팅 제공

구분	컨설팅 지원 항목	
	국내 사업화 컨설팅 지원 항목	해외 컨설팅 지원항목
홍보·마케팅 컨설팅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 등 ② 온라인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등 ③ 디자인·브랜드(BI/CI 등) 개발 컨설팅 ④ 기타	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 등 ② 지적재산권(국제특허 등) 출원 지원 등 ③ 해외 온/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(서류대행 등)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등 ⑥ 기타
판로개척 컨설팅	① 시장조사 및 분석 등 ② 공공판로 개척 지원 ③ 유통채널 확대, 신규채널 확장 등 ④ B2C, B2B 판매전략 수립 및 적용 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기관 연계, MOU체결 등) ⑥ 국내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등 ⑦ 기타	① 시장조사, 마켓테스트 등 해외 POC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등 ③ 해외수출유통채널(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) ④ 해외 인·허가/인증(ESG 인증 등)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기관 연계, MOU체결 등) ⑥ 해외박람회·전시 관련 컨설팅 등 ⑦ 기타

※ 컨설팅 지원 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사업화 자금지원: 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 제품 검증 및 홍보, 수출 등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지원(1개사 당 5천만원 이내)

구분	지원 내용	비고
시제품 제작	• 재료비,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, 위탁 제작 등	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*선정 후 안내
수출사업화 지원	• 물류지원, 포장지원(수출에 한함)	
연구개발/ 바이어 발굴	• 시장조사, 기술개발, 해외바이어 매칭·컨설팅 등	
제품 검증	• 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 등	
기업 홍보	•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제작 등	
박람회 참가	•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(여비제외)	

## □ 성과목표: 업력별 성과 목표 제시 필요

### ○ 업력별 성과 목표 제시 필요

-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기업별 목표를 함께 제시
- \* 예비 창업자의 경우,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창업 필수

## 2

## 신청·접수

### □ 신청기간: 2025. 3. 14.(금) ~ 4. 8.(화) 15:00까지

- \* 신청 마감일 15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일 15시 이전에 신청 서류를 모두 등록하여야 함
- \*\*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접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

### □ 신청방법: 해양수산창업투자플랫폼([www.kimst.re.kr/startup](http://www.kimst.re.kr/startup)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
## □ 제출서류

연번	신청 서류	비고
①	프로그램 신청서, 사업계획서	필수 제출
②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
③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	
④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
⑤	사업자등록증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	
⑥	최근년도('22~'24년) 결산 재무제표 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4년 재무제표 제출	창업기업 필수 제출
⑦	중소기업 확인서	
⑧	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	예비창업자 필수 제출
⑨	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본인신용정보조회서	
⑩	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 서류 등	해당시 제출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#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, 신청 시 유의사항

### □ 신청자격

#### ○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

- 예비창업자의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'사업을 개시한 날'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 - \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 - \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**[첨부1]**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
- 공동대표 구성된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\* 신청자격, 신청 제외 대상,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,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제외 대상** :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  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- 동일(유사)한 아이템(기술)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
  -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\*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    - \* 지원 제외 대상 업종 [첨부2] 참고

## 4 선정절차 및 일정

### □ 선정절차

- 사전검토, 서면평가,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(해양수산 신산업\*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\*\* 중점 선발)
  - \*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(기술): 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  - \*\* 전통산업 혁신: 해운·조선·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·친환경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(첨단기술: (디지털) AI, IoT, 빅데이터, 3D 프린팅 등 / (친환경)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)
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
  - \* ①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②서류평가 후 세부자격요건, 제외대상 검토
- \*\* ①신청서류 미제출, ②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 조치하며, 후순위 기업 선정함(기타 특이사항은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)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1.5배수) 선정
  - \* 지원 대상기업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

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
<서류/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
-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(20)	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	10
	■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,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* (수출기업의 경우) 글로벌 관계자 대상으로 소통, 홍보 등 진행 가능한 자료 등의 준비 완성도	10
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(30)	■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	15
	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	15
사업성 (40)	■ 목표시장 규모,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	20
	■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	20
사업비 (10)	■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	10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
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2~'24)</li> <li>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</li> </ul>
1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발굴 우수기업</li> <li>• '23년 사업화 R&amp;D 지원사업 우수 기업</li> <li>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</li> <li>•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</li> <li>• 해양수산 R&amp;D 기술이전 우수기업</li> </ul>

□ 선정 일정

선정절차	일정	세부내용
신청서 접수	3/14~4/8(15시)	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자격요건검토	4월 2주	신청자격, 제외 대상, 제출서류 등 검토
서류평가	4월 3주	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(합격자 개별 통보)
발표평가	4월 4주	대표자 발표평가(합격자 개별 통보)
최종선정	4월 중	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

\* 상기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창업 이후 사업비를 지급, 기한 내 창업 미 이행시 선정 취소처리함
- 수행기관 및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타부처 창업지원사업(자금지원)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(주제)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  - \* 사업종료 이후에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전액 환수 조치함
- 정부지원금 집행은 관리지침(대상자 최종 선정 알림 시 제공)에 따라 집행
  - \* 사업비는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 완료한 건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에 등록

### □ 선정자의 의무사항

-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전담기관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 및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(사전진단, 컨설팅 등)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
-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

구분	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전담 기관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김영진 연구원	02-3460-0374	kimbear@kimst.re.kr

\* 유선 부재 시 메일 문의

## 참고 1

## 창업 인정 기준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	창업아님	
	조직변경	동종업종 유지	창업아님	
		이종업종 변경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동일인인 경우 발행주식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아님 창업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 창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

\* 업종은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를 기준으로 하며, 세세분류(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업종"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**참고 2**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65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\*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를 기준으로 함

# 참고 3

# 사업비 집행기준

## 1.사업비 구분 및 증빙서류

지원항목	세목	내역
시제품 제작	재료비	<p>&lt;재료비는 정부지원금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(단,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)</li> <li>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li>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</li> </ul> <p>※ 금속, 보석,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,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고, 전담기관의 승인이 있을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</p> <p>※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</p>
	시설 임차료	<p>&lt;임차료는 정부지원금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등 생산을 위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</li> <li>전담기관 담당자가 불시에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 여부 및 목적내 사용 여부 확인 가능</li> <li>협약기간 내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공장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 주소지는 집행 불가</li> <li>관리비, 보증금 등 계약서상 월세 개념의 임대료 제외 비용은 집행 불가</li> <li>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비 집행 불가</li> <li>사무용품 및 집기, 가구, 생활가전, 노트북, 태블릿 PC, 차량 등은 집행 불가</li> </ul>
	외주 용역비	<p>&lt;외주용역비는 정부지원금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·제작할 수 없는 경우, 외부 업체에 의뢰·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</li> <li>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</li> <li>외부 전문업체(외주용역업체)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, 외주용역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(외주용역업체는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며, 관련 증빙자료(사업자등록증 등) 제출 필수)</li> <li>외주용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</li> </ul>
	기술 이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지원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,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</li> </ul> <p>※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 규정 우선,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</p> <p>※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, 이전금액, 사용기간, 이전내용,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술이전 관련 증빙자료 첨부</p> <p>※ 기술이전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 이전만 집행 인정</p> <p>※ 기술이전 금액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,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</p>

지원항목	세목	내역
수출 사업화 지원	물류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샘플, EMS등 해외물류 이용 대금, 운반비, 보관료 등 실 소요비용 지원</li> </ul>
	포장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포장디자인, 동판, 금형 제작에 소요된 비용으로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비용 등 지원</li> <li>※ 포장재 개선 전 후 비교 필수</li> </ul>
	통관 운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사업화 제품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, 통관 관련 검사비, 현지 보관 및 창고비용, Ship-back(보관, 보험, 운송, 재적재) 비용 등</li> <li>※ 관세는 지원 제외 대상</li> </ul>
연구개발/ 바이어발굴	기술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※ 사업기간내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건에 한함</li> </ul>
	해외현지 시장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, 소비 실태, 소비자관능조사 비용 및 수출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※ 여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</li> </ul>
	바이어 수출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제품 서비스, 기술 수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※ 회의비, 자료 번역비, 바이어 미팅 공간 임대료 등 집행 가능</li> </ul>
	해외 전문가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수출과 연관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로 멘토링·컨설팅 비용은 당해연도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을 준용하여 지급</li> <li>※ 동일한 전문가에 대하여 최대 5일(회)까지 집행이 가능하며,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</li> <li>※ 해외법인 설립/운영 법률자문, 해외사업계약서 검토, 자문 등 해외수출, 사업수행 등을 위해 외국인에게 컨설팅을 받을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(USD)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컨설팅 당일 하나은행 당일 기준 매매기준을 적용하며, 지출 서류에 함께 증빙 (협약기업 소속 전문가 비용 지급은 불가)</li> </ul>
제품 검증	시험 분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지원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, 제품-시스템-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</li> <li>※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, 참여 컨설턴트 이력,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</li> </ul>
	상표 특허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특허 출원 및 등록비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)의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</li> <li>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, 특허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·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</li> <li>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</li> <li>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은 협약기업의 명의인 경우만 가능함(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어야함)</li> <li>성공보수,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소요비용(선행특허조사비, 우선심사출원, 등록비용 등)은 집행 불가</li> </ul>

지원항목	세목	내역
	인증 취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사업화 추진을 위한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비용</li> <li>사업화 및 제품, 기술,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 거래처 요구 인증 취득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</li> </ul>
	전문가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사업화와 연관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로 멘토링·컨설팅 비용은 당해연도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을 준용하여 지급</li> <li>※ 동일한 전문가에 대하여 최대 5일(회)까지 집행이 가능하며,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</li> <li>※ 특허·인증 취득 등 제품 검증 과정 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집행</li> </ul>
	학회 및 세미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제품 검증 등을 위하여 지원기업 사업수행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</li> <li>※ 학회, 세미나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/ul>
기업 홍보	광고 선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※ 홍보영상제작비, 온라인쇼핑몰 입점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카탈로그 제작비, 온라인홍보비, 일간지·신문 등 광고비 등</li> </ul>
	해외 판촉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제품, 서비스, 기술 수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진행하는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운영 비용</li> <li>※ 입점비, 임차비, 장치비, 홍보비, 통역등 지원</li> <li>※ 자료 번역비 등 집행 가능</li> <li>※ 온·오프라인에 무관하게 판촉 행사 전반에 대하여 지원</li> </ul>
박람회 참가	국내 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등에 한하여 집행.</li> <li>※ 박람회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/ul>
	해외 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의 : 제품 홍보를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및 장치비,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.</li> <li>※ 박람회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</li> <li>※ 여비는 본 사업 사업비로 집행 불가</li> </ul>

※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

※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,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

## 2.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

- 유흥업종 : 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- 위생업종 : 이.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-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-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### 3. 비목별 집행증빙서류

지원항목	세목	내역
공통	공통	• 비교견적서 : 2천만원(부가세 포함) 이상 집행하는 경우 제출 필수
시제품 제작	재료비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견적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
	시설 임차료	• 세금계산서, 임대 공간 증빙사진, 임대차계약서, 거래내역서
	외주 용역비	• 세금계산서, 계약서(과업내용포함), 결과보고서, 검수조서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 • 필요시 제출 : 선급금이행보증보험(각서),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 • 비교견적서 : 2천만원(부가세 포함)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수
	기술 이전비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, 기술이전계약서, 완료보고서 또는 기술이전기업의 승인 공문
수출 사업화 지원	물류지원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수출신고필증,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, 인보이스, 지출내역
	포장개선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결과보고서(사진), 계약서, 지출내역
	통관 운송	• 수출신고필증,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, 인보이스, 지출내역
연구개발/ 바이어발굴	기술개발	• 계획서, 결과보고서,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)
	해외현지 시장조사	• 결과보고서,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)
	바이어 수출상담	• 결과보고서(사진포함), 바이어 소속 등 정보, 신분증, 거래내역서
	해외 전문가 컨설팅	• 결과보고서(사진포함), 자문료 수령 영수증, 신분증, 거래내역서
제품 검증	시험 분석비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시험분석서 또는 신청서, 거래내역서
	상표 특허취득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), 출원(등록)청구서·등록증 또는 신청서, 관납료 영수증 등
	인증 취득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인증신청서, 인증서, 거래내역서
	전문가 컨설팅	• 결과보고서(사진포함), 자문료 수령 영수증, 신분증, 거래내역서
	학회 및 세미나	• 학회(세미나) 카탈로그, 참가 확인 문서, 비용 납부요청 공문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)
기업 홍보	광고 선전비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계약서(과업내용 포함), 결과보고, 검수확인서(증빙사진), 홍보제작물 등
	해외 판촉비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판촉 결과보고서, 임차 계약서, 거래내역서, 통역비 영수증, 통역요원 ID사본, 통역활동 사진 등 제출
해외 홍보	국내 박람회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전시회(박람회) 카탈로그, 참가 확인 문서, 비용 납부요청 공문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)
	해외 박람회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전시회(박람회) 카탈로그, 참가 확인 문서, 비용 납부요청 공문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) • 통역비 영수증, 통역요원 ID사본, 통역활동 사진 제출
	해외 판촉비	•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판촉 결과보고서, 임차 계약서, 거래내역서, 통역비 영수증, 통역요원 ID사본, 통역활동 사진 등 제출